

SOC 민자사업에 대한 외자유치 촉진방안 -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

-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개정(2004. 1. 13)으로 미화 1천만 달러 이상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조성사업에 대해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이 가능하게 되었음
 - 조세감면혜택 : 법인세 7년간 100%, 그후 3년간 50% (2004년까지)
→ 5년간 100%, 그후 2년간 50% (2005년부터)
 - 외국인투자지역 개발에 대한 지원, 임대료,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등
- 개정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제도가 SOC민간투자사업의 효율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나 아래사항의 개선이 필요함
 -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 마목)을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조성·운영하는 사업”으로 개정하여 운영기간을 포함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명시
 -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은 민간투자법에 의한 협상대상자 지정 시점 이후에 추진하며,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원사항을 민간투자사업 시행조건에 반영할 수 있기 위해서는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이전에 투자지역을 지정
 - 광역 도로 및 철도 사업의 지정권자, 하수도나 전기통신설비 사업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범위 등 SOC 민간투자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기준 제시 필요

1.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의 의의

-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개정(2004. 1. 13)으로 민간투자법상의 사회간접자본(SOC) 민간투자시설사업에 대하여 외국인투자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 가능
 - 금번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의 개정으로
 - 외국인투자가에게 민간투자법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조세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 정부는 부족한 SOC시설 투자재원을 보전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 ※ 기존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제조업(공장), 연구시설, 고도기술 수반사업 등을 위주로 지원

외국인투자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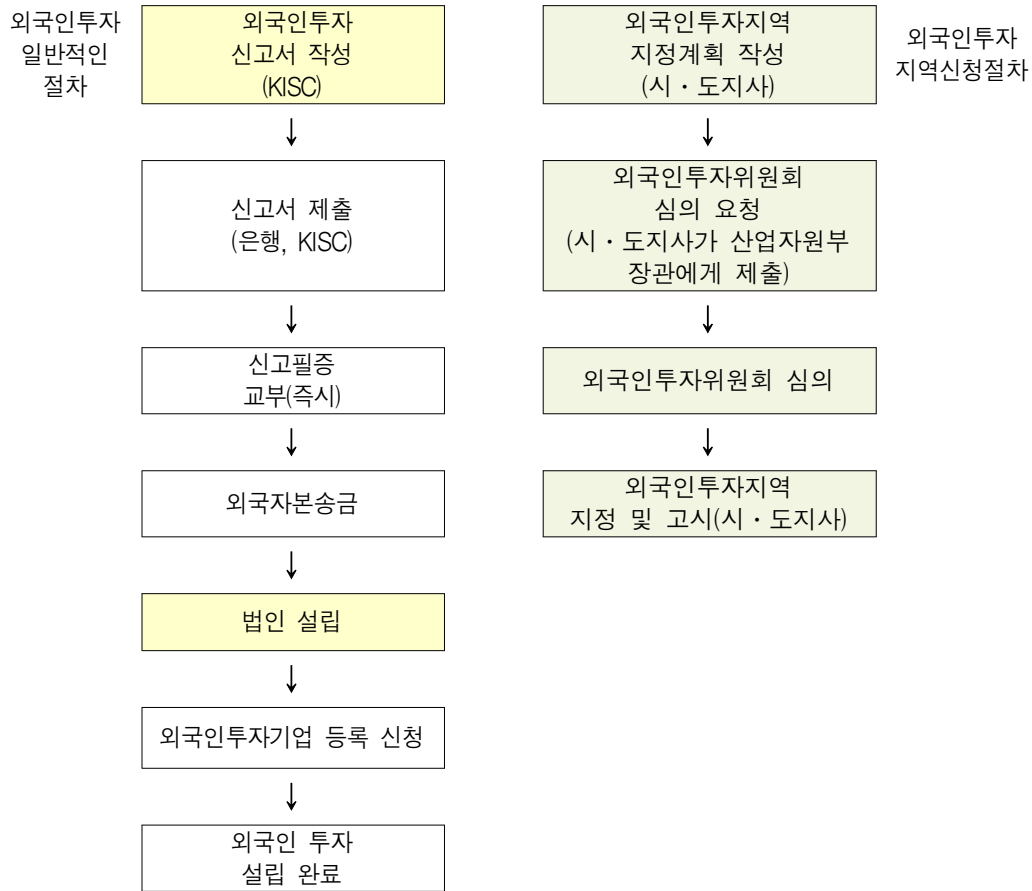
-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의 외국인투자라 함은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과 장기차관을 의미함
-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은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임
- 장기차관은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 및 그 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임

2.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요건 및 절차

- 민간투자법상 SOC 민간투자사업과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요건
 -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새로이 설치하는 사업으로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에 의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조성하는 사업(귀속시설에 한함 : BTO, BOT¹⁾)

1) BTO :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 BOT :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 후 일정 기간 동안 해당시설의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에게 인정되며 그 기간 만료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절차 >



3.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SOC사업에 대한 지원

-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조세감면 적용(조세특례제한법 제5장 제121조의 2)

- 국세(법인세·소득세) : 7년간 100%, 그후 3년간 50% 감면
- 토지 건물에 대한 지방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 5년간 100%, 그후 3년간 50% 감면
- 부가세·특소세·관세 : 수입 자본재 3년간 100%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2005년 1월 1일 이후부터 국세(법인세·소득세)는 5년간 100%, 그후 2년간 50%로 감면되며, 토지건물에 대한 지방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는 5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으로 변경

- 임대료 · 교통유발부담금 등 면제 및 지원
- 외국인투자지역 개발에 대한 지원
-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다른 법률 적용 배제
- 민간투자법과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의 지원 비교

구분	민간투자법 (사업시행자 지정시)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시)
조세 및 기타 부담금 감면	• 투자액의 5% 법인세 부과시 손금처리 • 수도권내 신설법인 등록세 3배 중과세 예외 인정 • BOT사업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 등록세 면제 • 농지조성비, 대체조립비 50~100% 면제 • 귀속사업에 한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시설건설용역에 대한 부가세영세율적용 •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 이자 손금 인정 • 12년 이상의 사회간접자본채권 이자소득에 대하여 15%의 분리세율 적용	• 국세(법인세 · 소득세) : 5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 • 토지건물에 대한 지방세(취득세 · 등록세 · 재산세 · 종합토지세) : 5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 • 부가 · 특소세 · 관세 : 수입 자본재 3년간 100% 면제 • 외국인투자지역내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100% 면제 • 외국인투자지역 안의 시설물 등의 건축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 양도소득세 감면 및 취득세 · 등록세 면제(지방세법 제276조) • 산림전용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대체농지조성비, 개발부담금, 대체조립비, 대체초지조성비, 공유수면점용료 등 7개 부담금 면제(산림법 등)
기 타 지 원	• 재정지원 • 최소운영수입보장 및 초과운영수입환수 • 환리스크에 대한 위험분담 • 매수청구권의 인정 • 부대사업시행 • 토지수용권 부여 • 국공유재산 무상임대 등 활용	• 개발비용 및 기반시설지원 • 토지분할시 시 · 군 · 구청장 허가 생략 • 수출 또는 수입제한 완화 • 중소기업 고유업종 참여 제한 등 적용배제 • 국가유공자 고용의무 적용 배제

※ 굵은 글자 부분이 각 법률 고유의 지원이거나 지원이 더 큰 경우임

4.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개정관련 검토사항

□ 신설규정의 적정성

- 신설된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민간투자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에 의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귀속시설에 한한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정하고 있음
- 그러나 같은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사업을 보면 “복합화물터미널사업” 또는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신설조항과 같이 “조성하는 사업”으로만 규정한 것은 마치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조성한 이후에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음
- 따라서 위 규정을 “... 사회간접자본시설(귀속시설에 한한다)사업” 또는 “... 사회간접자본시설(귀속시설에 한한다)을 조성·운영하는 사업”으로 향후 개정하여 운영기간을 포함하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 민간투자사업에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절차를 추진하여야 할 적절한 시기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은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민간투자법에 의한 경쟁절차를 거쳐 협상대상자를 지정한 후에야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 또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가지게 될 각종 지원인 기반시설지원, 법인세 등 각종 세제 및 부담금 감면 등을 민간투자사업 시행조건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적어도 실시협약 체결 전에는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완료하는 것이 적절함

□ 도로, 철도 등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지정권자 및 지정지역의 범위 등

- 산업단지나 공장 설치지역 등 특정지역에 한정된 부지를 대상으로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아래와 같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도로, 철도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노선 전체에 해당하는 부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인지, 하수도나 전기통신설비 민간투자사업의 경우도 하수관거나 통신 선로가 위치하는 부지까지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해야 하는지 등 외국인투자지역의 범위 문제

- 도로, 철도 등의 사업부지는 여러 시·도에 걸쳐 사업부지가 정하여지므로 어떤 시·도지사가 지정, 관리, 지정해제를 하여야 하는지 지정권자의 문제

-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증설이나 개량의 경우도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정하고 있는 요건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새로운 설치”에 해당하는 것인지 요건에 대한 명확한 해석 문제

- 위와 같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은 그 요건 및 절차에서 명확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므로, 향후 민간투자사업의 특징을 반영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필요함

민자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은 SOC시설에 외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기초적인 기반이 제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향후 구체적이고 명확한 실행방안이 마련되어야만 제도개선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임

국토연구원 황창용 전문위원, 정민웅 연구원 (mujung@krihs.re.kr 031-380-0688)